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7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전용기 · 이해식
김남근 · 박상혁 · 신영대
박홍배 · 한준호 · 안호영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제3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 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량보다 크게 표시한 경우

제6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7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의2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73조제6호 중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를 “상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량보다 크게 표시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 ----- ----- ----- ----- ----- ----- ----- ----- 이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u> ① <u>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u>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
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
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
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
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로 정한다.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
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
량보다 크게 표시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청문)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
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본다. 1. · 2. (생략) <u><신설></u> 4. · 5.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u>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u>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의2에 따라 <u>정량표시</u> <u>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u> <u>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u> 4. · 5.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상</u> <u>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u> <u>량보다 크게 표시한 자</u>
---	---